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별표4] <u>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u>				[별표4] <u>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u>			
구분	대상	시기	비고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태양광 설비 (가)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간척지 및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염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6) (생략) . . (9) (생략)	(생략) 4년이내 2년이내 (생략)	(생략)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생략)	(1)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나. (생략)	(7) (생략) (1) (생략) (4) (생략)	(생략) (생략)		나. (생략)	(7)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비 고 : 1. (생략) 2. (생략) 3. (신설)				비 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제1호(5)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 또는 지면인지 여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u>			